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

1. 대상 투자신탁 :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2.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25일

### 3. 변경사유

- ① 환매수수료 삭제
- ② 수익증권 신설 : 종류 A-E, 종류 C-P, 종류 C-P2, 종류 S-P2
- ③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④ 기타 수익률 자료 등 업데이트

### 4. 변경사항

#### 가.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투자신탁 의 명칭 및 종류)	① 내지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지 1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지 11. (현행과 같음) 12. 종류 A-E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13. 종류 C-P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14. 종류 C-P2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15. 종류 S-P2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제10조 (수익증권)	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발행하여야 한다. 1. 내지 11.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발행하여야 한다. 1. 내지 11. (현행과 같음)

<p>의 발행 및 예약)</p>	<p>&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p> <p>② 내지 ⑤ (생략)</p>	<p>12. 종류 A-E 수익증권 13. 종류 C-P 수익증권 14. 종류 C-P2 수익증권 15. 종류 S-P2 수익증권</p> <p>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2 (수익증권 의 전환)</p>	<p>① 내지 ④ (생략) ⑤ 제41조에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 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 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 우. 다만 전환 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 내지 ④ (생략)</p> <p>&lt;삭 제&gt;</p>
<p>제39조 (보수)</p>	<p>① 내지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___ 금액으로 한다. 1. 내지 11.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___ 금액으로 한다. 1. 내지 11. (현행과 같음)</p> <p>12. 종류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4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13. 종류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6.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14. 종류 C-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7.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15. 종류 S-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p>

		<p>: 연 1000분의 7.2</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1</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p> <p>: 연 1000분의 0.2</p>
<p><b>제40조</b> (판매수수료)</p>	<p>① (생략)</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 100분의 1.0 이내</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③ 내지 ⑤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 100분의 1.0 이내</p> <p>2. 종류 A-E 수익증권 : 100분의 0.5 이내</p> <p>③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b>제41조</b> (환매수수료)</p>	<p>①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30일미만 : 이익금의 70%</p> <p>2.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p> <p>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b>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b></p>
<p><b>제43조</b> (신탁계약의 변경)</p>	<p>① 내지 ③ (생략)</p> <p>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___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___ 아니하다.</p>	<p>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___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___ 아니하다.</p>
<p><b>제45조</b></p>	<p>① 내지 ② (생략)</p>	<p>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투자신탁의 해지)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___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b>&lt;삭 제&gt;</b></p>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___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b>&lt;신 설&gt;</b>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환매수수료)는 변경시행일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갱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운용인력(운용현황)</li> <li>-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li> <li>-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li> <li>-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li> <li>-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li> </ul>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b>&lt;추 가&gt;</b>	<b>2017-01-25</b> 신탁계약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매수수료 삭제</li> <li>- 종류 A-E / 종류 C-P / 종류 C-P2 / 종류 S-P2 수익증권 신설</li> </ul>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b>&lt;환매수수료 삭제&gt;</b> - 모든 종류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 - 전환시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b>&lt;신 설&gt;</b> <b>(1) 종류 A-E 수익증권 : 금융투자협회코드 (BL505)</b> ① 가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②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5% 이내 ③ 투자신탁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li> <li>-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4%</li> <li>-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li> <li>-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li> </ul> <b>(2) 종류 C-P 수익증권 : 금융투자협회코드 (BL506)</b> ①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②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p>③ 투자신탁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li> <li>- 판매회사보수율 : 연 0.6%</li> <li>-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li> <li>-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li> </ul> <p><b>(3) 종류 C-P2 수익증권 : 금융투자협회코드 (BL507)</b></p> <p>①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p> <p>②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p> <p>③ 투자신탁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li> <li>- 판매회사보수율 : 연 0.7%</li> <li>-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li> <li>-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li> </ul> <p><b>(4) 종류 S-P2 수익증권 : 금융투자협회코드 (BL508)</b></p> <p>① 가입자격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p> <p>②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p> <p>③ 투자신탁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li> <li>- 판매회사보수율 : 연 0.21%</li> <li>-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li> <li>-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li> </ul>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접합한 투자자 유형</p>	<p>※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b>12.78%</b></p>	<p>※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b>13.12%</b></p>

끝.